

투찰회원 업무계약서

KG2B전자입찰시스템(www.kg2b.com ,이하 “전자입찰시스템”이라 칭함)을 이용함에 있어 “회사”와 “투찰회원”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아래 약정사항과 같이 업무계약을 체결하고,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.

약정사항

제1조[목적]

본 계약은 “전자입찰시스템서비스 제공기관”인 “회사”와 “이용기관”인 “투찰회원”의 전자상거래를 함께 있어 상호간의 계약의지를 확고히 하고, 나아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[정의]

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다.

- “회사” : 본 시스템을 제공하는 운영주체는 케이비드(주)를 말한다.
- “이용기관” :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“투찰회원”을 말한다.
- “투찰회원” : 발주처(社)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를 말하며, 개인사업자/법인사업자를 포함한다.
- 낙찰수수료 :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낙찰받은 공고건에 대한 수수료를 말하며, 낙찰금액에 따른 수수료율을 지칭한다.

제3조[서비스 내용]

- “회사”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“발주처(社)”와 “투찰회원”간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 발주처(社)와 “투찰회원”간의 구매 및 판매(영업) 업무를 지원한다.
- “회사”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.
 - “발주처(社)”의 입찰 건에 대한 입찰정보를 이메일 또는 SMS 발송.
단, “투찰회원”이 가입 시 카테고리 설정에 따라 입찰정보가 발송되며, “발주처(社)”의 지역별 설정에 따라 입찰정보를 제공한다.
 - “투찰회원”이 참여한 견적 및 입찰 건에 대한 낙찰정보를 시스템으로 공개.
다, “회사”는 회사에서 진행되는 전자입찰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별도 이용료를 청구 할 수 있다. 별도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일정은 서비스 메인 화면의 공지사항에 게재하는 것으로 같음한다.

제4조[서비스 조건]

- “회사”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“발주처(社)” 및 “투찰회원”이 온라인상에서 구매 및 판매(영업)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 이므로, 거래 당사자들간의 거래분쟁에 대해서 “회사”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.
- “회사”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“발주처(社)”와 “투찰회원”간의 거래완료에 따른 계약(발주)금액에 따라 낙찰수수료를 청구하며, 그 방법 및 절차는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한다.

제5조[서비스 이용제한]

“투찰회원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항을 준수하며, 미 준수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.

■ 서비스 이용제한 기준 및 조치

항목	이용제한 기준사항	제재 및 조치내용
1	회원정보의 허위등록 및 위조서류의 등록이 확인된 경우	자격상실 (투찰회원 등록말소)
2	운영자가 정한 정보이외에 고의적으로 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(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)를 송신 또는 게시한 경우	
3	시스템을 통하여 획득한 회원사 및 KG2B의 정보 및 자료등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	
4	정당한 입찰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“투찰회원”의 일방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1회 - 주의 / 2회 - 경고 / 3회 - 1개월 정지	사실여부 확인 후 제재
5	동일한 입찰건에 대하여 투찰회원이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	무효처리
6	KG2B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	이용제한 (6개월)
7	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수수료를 납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	이용제한 (미납기간 내)

항목	이용제한 기준사항	제재 및 조치내용
8	운영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하는 경우	이용제한 (6개월)
9	기타 전자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	이용제한 (6개월)
10	관련 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	해당기간
11	위 7항 - 10항의 사항을 동일사안으로 위반하여 1년 이내에 조치를 받은 경우	기존 2배가중 (최대 1년)
12	기타 정상적인 입찰질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자로 발주처로부터 입찰참여 제한을 요청하는 업체 (“블랙리스트” 등제 업체)	사실여부 확인 후 별도 제재

제6조[회원등록비]

- “회사”는 “투찰회원”이 가입 시 “회사”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에 따른 회원등록비를 부과하며, 금액 및 기간은 “회사”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에 별도 공지한다.

제7조[낙찰수수료]

- “회사”가 운영하는 KG2B전자입찰시스템(www.kg2b.com)을 통하여 “투찰회원”이 낙찰 및 계약이 체결되었을 시에 “회사”가 정한 소정의 낙찰수수료를 “투찰회원”에 부과한다. 낙찰수수료(율)는 “회사”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내에 공지한다.
- “회사”는 필요할 경우 낙찰수수료율을 신설, 변경할 수 있으며,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“회사”가 제공하는 서비스 화면의 공지사항란에 공지하며, 변경된 수수료는 공지 시 적용일자를 공지한다.
- “투찰회원”은 “회사”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투찰한 결과, 특정 사유로 인해 2회 이상 유찰되어 발주처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해당건에 대해서는 낙찰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.
-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단가에 예상수량(또는 계약기간)을 곱한 금액인 총액을 기준으로 낙찰수수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수수료율에 따라 수수료를 “투찰회원”에게 청구한다.

제8조[낙찰수수료 부과 기준 및 납부기한]

- “회사”가 “투찰회원”에게 부과하는 낙찰수수료 청구는 개찰완료건(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 결정 시)을 기준으로 한다. 납부기한은 개찰완료일로부터 “7” 일 이내로 하되, 개찰이 완료되었으나 발주처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, 또는 미체결된 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며, 기납부 수수료는 환불처리 한다 (단, 정상적인 개찰완료건을 투찰처가 임의로 계약을 포기할 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)
- “수수료”는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낙찰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이 다를 시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제 계약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등을 말한다)를 “회사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“발주처(社)”와 “투찰회원”과의 계약 또는 발주가 완료된 건에 대해 “회사”는 “투찰회원”의 낙찰수수료에 대한 매출채권을 확인한 후, “투찰회원”에게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송한다. 단, “발주처(社)”와 업무조정(정당한 사유)에 의한 발주(계약)취소, 연기로 인한 사유 발생시,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“회사”에게 유무선으로 세금계산서 수정 및 취소 요청을 해야 하며, “회사”는 접수 후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.

제9조[연체료 부과 및 서비스 이용제한]

- “투찰회원”은 낙찰수수료 미납 시, 제5조[서비스 이용제한] 조치를 취하며, 낙찰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3개월간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연체료(년 8%)를 일괄적용하며, 4개월째까지 미납 시에는 제5조[서비스 이용제한]의 적용 및 사실을 공지와 동시에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.

간인

(인)

약 정 사 항

[회 사]	[투 찰 회 원]
주 소 :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55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1112호	주 소 :
상 호 : 케이비드(주)	회 사 명 :
대 표 자 : 원 용 춘 	대 표 자 : (인)